2027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운영 안내

1. 관련 법령 및 규정

가.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제3항

나.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다. 교육부고시 제2021-31호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 제4항

라.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교육실습)

마. 「수업 관리 내규」 제19조(학교현장실습)

2. 2027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수요조사 [강의지원시스템(LMS) 비정규과목 설문)'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대상 학생은 반드시 기한 내에 수요조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1) 사범대학 : 2027학년도 1학기에 7, 8학차 이상 재학생

2) 교직과정 : 2027학년도 1학기에 교직이수예정자 중 7, 8학차 이상 재학생

3) 교육대학원 : 2027학년도 1학기에 교직이수예정자 중 5, 6학차 이상 재학생

나. **학교현장실습 수요조사 기간** : 2026. 11. 2.(월) 09:00 ~ 11. 15.(일) 23:59까지

※ 수요조사 기간 내 응답하지 않는 경우, 2027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신청의사가 없는것으로 간주 (별도 추가 안내하지 않음)

다. 학교현장실습(4주실습) 기간 : 2027. 5. 6.(목) ~ 6. 2.(수) <4주간>

라. 학교현장실습 업무 처리 관련하여 본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학교현장실습	실습생 학과(전공), 자격종별, 표시과목, 성명, 학번, 주소, 연락처	「고등교육법」 제22조, 제23조

3. '학교현장실습 기관 섭외 및 신청' 안내

*** 실습학교 섭외 및 배정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교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연고지’ 신청 안내(학생이 직접 실습학교 섭외)

※ 교육학, 사회 계열 등 협력학교 배정이 어려운 표시과목의 경우 연고지 신청 권장

1) **연고지 신청 절차**

① 학생이 실습학교의 구두 승인을 확실히 받아야 함.

※ 교장선생님 승인을 받은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함.**

※ 무학중·고등학교는 별도 연고지 신청 없이 협력학교 신청만으로 실습 배정 예정

② **학생이 직접 강의지원시스템(LMS) 수요조사(비정규과목 설문)에 실습학교 정보를 조사 기간 안에 정확하게 입력**

(학교알리미의) 학교명, 학교 주소(도로명), (승인확인용) 교사명 및 보직, (승인확인용) 교사 연락처(내선번호 혹은 휴대폰)/이메일

③ 소속 학과에서 실습학교에 승인 여부 전화 확인

④ 학과에서 승인 확인 완료된 명단을 교원양성지원센터에 공문으로 제출하면 우리 대학교 총장 명의 실습 의뢰 공문을 실습학교에 전자문서로 발송

⑤ 실습학교의 실습 수락/승인서 공문이 전자문서로 회신되면 실습학교 배정 완료

⑥ **성범죄경력조회 관련 서류(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를 추후 안내한 일정에 학과에 제출**

(제출 일정은 추후 공지예정 : 학과에서 제출한 서류 수합하여 교원양성지원센터에 제출)

2) **연고지 신청 일정**

① **수요조사(학생)** : 2026. 11. 2.(월) 09:00 ~ 11. 15.(일) 23:59까지

※ 일정이 촉박하여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정해진 일정 내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② 소속 학과에서 수요조사 결과 확인/공문제출 : 2026. 11. 18.(수) ~ 11. 27.(금)

③ [교원양성지원센터] 실습학교에 실습 의뢰 공문(실습생 인적사항 포함)을 전자문서로 발송기한 : 2026. 12. 31.(목)까지

※ 실습학교에서 실습 의뢰 공문을 급히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원양성지원센터 (053-850-3506)로 연락하여 전자문서 발송 시기를 요청할 수 있음.

나. 협력학교 신청 안내(교원양성지원센터에서 실습학교 일괄 배정)

1) **‘협력학교’ 신청 절차**

① 학생이 직접 수요조사(LMS 비정규과목 설문)에 ‘협력학교 신청’ 응답

② 아래 공지된 희망학교 순위 신청기간에 **학생지원포털-학적/졸업-교직-협력학교신청에서** 배정 희망 순위 신청

※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희망 우선순위는 임의 배정 처리(별도추가 안내 없음)

③ **성범죄경력조회 관련 서류(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를 추후 안내한 일정에 학과에 제출**

(제출 일정은 추후 공지예정 : 학과에서 제출한 서류 수합하여 교원양성지원센터에 제출)

2) **'협력학교' 신청 일정**

① **수요조사(학생)** : 2026. 11. 2.(월) 09:00 ~ 11. 15.(일) 23:59까지

② **희망학교 순위 신청기간** : 2027. 1. 4.(월) 09:00 ~ 1. 8.(금) 17:00까지

3) **'협력학교' 배정 방법**

① 직전 학기(2026-겨울학기 제외)까지의 성적순(실점 기준)으로 선발

② 상기 원칙에도 불구하고 **협력학교 요청사항과 실습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실습학교 배정이 달라질 수 있음.**

③ 실습생이 원하는 학교로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

* **무학중•고등학교는 별도 연고지 신청 없이 '협력학교 신청'만으로 실습 배정 예정**
* **무학중•고등학교(본교 사범대 부속 중고등학교) 에 대한 학교현장실습 관련 문의는 반드시 교원양성지원센터를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개인적 요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선방지를 위함)

4. 『학교현장실습』 과목 수강 관련 유의사항

1) 2027-1학기 수강신청기간에 '학교현장실습(2학점)' 과목을 반드시 수강 신청하여야 함.

2) 『학교현장실습』 과목 수강 신청 후 휴학 및 개인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반드시 교원양성지원센터로 통보해 주어야 하며, 해당 실습학교에도 취소 의사를 반드시 알려주어야 함.

5. 2027학년도 학교현장실습 관련 추후 일정

1) 실습학교 배정결과 확인

■ 확인 기간 : 2027. 2. 1.(월) 이후(예정)

■ **학생지원포털-학적-교직-학교배정결과확인PG에서** 확인 가능

2) 학교현장실습 사전교육(전체) : 일자 및 장소 추후 안내 (3월 말 혹은 4월 초 예정)

■ **학교현장실습 관련 문의 : 교원양성지원센터(053-850-3506)**